

# 주주간계약서(동업계약서)

본 주주간계약서(이하 “본 계약”)는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 회사 운영 관련 사항, 회사 및 주주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자 \_\_\_\_년 \_\_월 \_\_일(이하 “체결일”)로 체결되었다.

## 주주

1. [성명] \_\_\_\_ (이하 “주주1”)

[생년월일] \_\_\_\_\_

[주소] \_\_\_\_\_

2. [성명] \_\_\_\_ (이하 “주주2”)

[생년월일] \_\_\_\_\_

[주소] \_\_\_\_\_

## 회사

[회사명] \_\_\_\_\_ (이하 “회사”)

[법인등록번호] \_\_\_\_\_

[주소] \_\_\_\_\_

[대표이사] \_\_\_\_

## 제1조 (회사와 주주의 지위)

① 회사는 [ ]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본 계약 체결 일 현재 발행주식 총 수는 보통주식 [ ]주(1주의 액면금액 [ ]원)이다.

② 주주1은 회사의 발행주식 [ ]주(지분비율: [\*]%)를 소유하고 있다.

③ 주주2는 회사의 발행주식 [ ]주(지분비율: [\*]%)를 소유하고 있다.

## 제2조 (업무)

① 주주1은 대표이사로서 인사, 조직관리, 재무 · 회계, 자금 유치 등 회사 업무 총괄, 주주2는 [사내이사]로서 [ ] 업무를 담당하며, 각기 담당한 회사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주주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주주들 전원]의 합의로 결정하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주주들의 합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1. 정관의 변경
2. 주된 사업의 변경, 신규 사업의 진출
3. 주식 및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자본금의 증감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
4. 배당의 결정
5. 사업의 중단 또는 포기, 사업양수도,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의 양도, 영업의 양수, 위탁경영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
6. 회사와 주요 경영진 및 이들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7. 회사가 [\*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③ 회사 및 주주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주주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1.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사항
2.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의 결정
3. 기타 회사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제3조 (계속근로의무)

① 주주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사유를 불문하고 [\*]년간 다른 주주들 전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회사에서 퇴사하여서는 안된다. 단, 해당 주주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년 이내에 회사에서 퇴사하는 경우, 다른 주주는 퇴사하는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퇴사일 당시의 각 지분율에 따라 퇴사하는 주주로부터 액면가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본 조에 의한 권리행사는 퇴사자가 다른 주주 및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약금 등 손해배상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4조 (경업금지 및 신회사설립금지)

① 주주는 회사에 재직 중인 기간 및 회사를 퇴사한 날로부터 [\*]년간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동종의 사업 또는 회사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하 “경쟁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② 주주는 회사에 재직 중인 기간 및 회사를 퇴사한 날로부터 [\*]년간 경쟁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회사를 설립하거나 경쟁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경쟁회사”)의 지분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 (주식의 처분제한)

① 주주는 다른 주주들 전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이상 자신이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

② 주주는 전항에 의하여 다른 주주의 사전 서면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보유 주식을 처분하고자 한다는 취지, 처분 상대방에 대한 정보, 처분 주식수, 주당 처분 가격, 처분예정일, 기타 처분의 주요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다른 주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제1항에 따라 다른 주주들 전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제6조 및 제7조의 제한 하에서만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 제6조 (우선매수권)

① 주식을 매도하고자 하는 주주(이하 “양도인”)가 보유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다른 주주를 포함하고, 이하 “양수 예정자”라 한다)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주주(이하 “우선매수권자”)는 양수 예정자에 우선하여 동 주식을 매수할 권리(이하 “우선매수권”)가 있다.

② 양도인은 양수 예정자에게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인이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고자 한다는 취지, 양수 예정자에 대한 정보, 양도 주식수, 주당 양도 가격, 양도예정일, 기타 양도의 주요조건(이하 “주요 양도 조건”)을 명시하여 양도 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우선매수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우선매수권자는 양도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양도 주식에 대해 여야 할 의사가 있음을 통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양도인은 처분 대상 주식을 우선매수권자에게 주요 양도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도하여야 한다.

④ 우선매수권자가 제2항의 통지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위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인은 제2항에 따라 양도 통지된 주식 중 우선매수권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주식을 다음의 조건으로 양수 예정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1. 양도주식수는 제2항에서 통지된 주식 수와 일치하여야 한다.

2. 주당 가격은 제2항에서 통지된 주당 양도가격을 하회하여서는 아니된다.

3. 양도의 기타 조건은 제2항에 의하여 통지된 주요 양도 조건보다 양수 예정자에게 유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양도 예정일 이외의 일시에 양도하는 것은 주요 양도 조건보다 유리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양수 예정자에게 주식이 매각되지 아니할 경우, 양도인은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 (공동매도권)

① 양도인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주주(이하 “공동매도권자”)는 제6조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대신 양도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하 “공동매도권”)가 있다.

② 공동매도권자는 양도인으로부터 제6조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하 “공동매도통지 기간”)에 자신이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양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주요 양도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 양수 예정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인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함께 공동매도권자가 양도를 희망하는 주식이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통지된 주요 양도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수 예정자에게 양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동매도통지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수 예정자에게 주식이 매각되지 아니할 경우, 양도인은 제2항에 규정된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 (기밀유지)

① 주주는 회사에서의 근무 등 본 계약에 의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 및 다른 주주로부터 취득한 일체의 비밀(사업계획 및 파트너쉽 등 사업상 비밀, 기술 및 노하우 관련 비밀, 인사, 조직, 재무 전산 등 관리 비밀, 거래처 등 영업 비밀 등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을 타인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거나,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본 조의 기밀유지의무는 주주가 회사에 재직 중인 기간 및 퇴사한 날로부터 [\*]년간 유효하다.

## **제9조 (손해배상)**

주주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주주는 책임 있는 주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0조 (위약벌)**

주주가 제[\*]조, 제[\*]조, 제[\*]조를 위반한 경우, 제10조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로 [\*]원을 다른 주주에게 지급한다.

## **제11조 (본 계약의 종료)**

① 주주들 전원의 서면합의가 있거나 주주가 본 계약에 의하여 보유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의 수가 [\*]주 미만이 되는 경우, 본 계약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당 주주에 대하여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 제[\*]조, 제[\*]조 규정은 본 계약의 종료와 관계없이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고 주주를 구속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의 종료 시점에 이미 발생한 주주들의 권리 및 의무(손해배상의무 등을 포함한다)는 본 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제12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제한)**

주주는 다른 주주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 **제13조 (기타)**

① 본 계약은 본 계약에 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주들 사이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한다.

②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세금 등은 해당 비용이 발생하거나 법령에 의해 동 세금이 부과되는 주주가 부담한다.

③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이에 따라 해석된다.

④ 협의에 의하여 본 계약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_\_\_\_년 \_\_월 \_\_일

**회사**

[상호] \_\_\_\_\_

[법인등록번호] \_\_\_\_\_

[주소] \_\_\_\_\_

대표이사 \_\_\_\_\_ (인)

**주주**

**1. 주주1**

[성명] \_\_\_\_ (인)

[생년월일] \_\_\_\_\_

[주소] \_\_\_\_\_

**2. 주주2**

[성명] \_\_\_\_ (인)

[생년월일] \_\_\_\_\_

[주소] \_\_\_\_\_